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904호

제출년월일 2021. 11. . 제 출 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산업단지 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공공하수도사용료 산정 기준으로 변경하여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입주업체의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일부 지원사항 신설(안 제10조제4항)

나.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사용료 산정기준 변경(안 별표 제2항나목)

3. 참고사항

가. 신 • 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현행 자치법규 : 붙임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10. 13. ~ 11. 2.(20일)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환경부 수질관리과

나) 경 기 도 : 환경안전관리과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2022년: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40% 지원
- 2. 2023년: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20% 지원

별표 제2호나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10조제4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소관 실·과·소		기업지원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 명	기업지원과장 송 천 영
	팀 장 직위·성명	산업단지관리팀장 장 진 혁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환경주사보 김 창 국(☎2289)